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17.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정원 3명(소방교 3명)의 직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장 3명)하며 행정안전부령 제326호에 따라 상향 조정한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으로 환원(소방경 1명, 소방위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6.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80”을 “278”로,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소방령 “59”를 “58”로, 소방경 “58”을 “5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0”을 “278”로, 소방공무원 계 “235”를 “233”으로, 소방령 “63”을 “61”로, 소방경 “61”을 “60”으로, 소방위 “55”를 “56”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소방장 “17”을 “20”으로, 소방교 “12”를 “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92”를 “491”로, 소방공무원 계 “392”를 “391”로, 소방경 “42”를 “41”로,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 대기관담당) 3”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3”를 신설,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 대기관담당) “6”을 “3”으로 한다.

별표 5의4 중 총계 “492”를 “491”로, 소방공무원 계 “392”를 “391”로, 소방경 “43”을 “42”로,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6”을 “3”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 대기관담당) 3”를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항공정비담당) 1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3”를 신설,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6”을 “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감원 및 정원 2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4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2명(소방령1, 소방경1)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장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3명(소방교 3명)으로 본다.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관 교육훈련담당관	3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장비기술국	1명 (소방감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119대응국 대응총괄과	6명 (소방준감 1명, 소방령 3명, 소방위 2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	4명 (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5급 1명, 소방위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80</u>		<u>278</u>	-2	
소방공무원	계		<u>235</u>		<u>233</u>	-2	
	.		.		.		
	.		.		.		
소방령			<u>59</u>		<u>58</u>	-1	
소방경			<u>58</u>		<u>57</u>	-1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80</u>		<u>278</u>	-2	
소방공무원	계		<u>235</u>		<u>233</u>	-2	
	.		.		.		
	.		.		.		
소방령			<u>63</u>		<u>61</u>	-2	
소방경			<u>61</u>		<u>60</u>	-1	
소방위			<u>55</u>		<u>56</u>	+1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소방장			<u>17</u>		<u>20</u>	+3	
소방교			<u>12</u>		<u>9</u>	-3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92	491	-1
소방공무원 계	392	391	-1
소방경	42	41	-1
전문경력관	6	3	-3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신 설>	3	+3
전문경력관	<신 설>	3	+3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6	3	-3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4]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92	491	-1
소방공무원 계	392	391	-1
소방경	43	42	-1
전문경력관	6	3	-3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신 설>	3	+3
전문경력관	<신 설>	3	+3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6	3	-3

